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지현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1월 8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1월 9일

3. 제안이유

영농활동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영농폐기물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충청북도가 관할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임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폐농업자재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기에 조례로 제정함이 정당함.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농업자재 관리와 자연환경보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 이행 관련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어 상위법령 취지에 있어서도 적합함.
- 조례 제정을 통해 추계된 소요예산은 매년 총 33억원 가량으로, 국비 등의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농약용기류, 농촌폐비닐 등의 영농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는 예산지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영농폐기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조례안 예고('24. 1. 11. ~ 1. 17.)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본 조례는 '24년 1월 기준 8개 시·도가 제정·시행 중이며, 문제된 사항이 없음.

○ 제정안은 총 6개의 조문이며,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친환경농어업법」 등에 근거하여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됨.

○ 농약용기류, 농촌폐비닐, 폐반사필름 등의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게 되면 토양 및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불법 소각하는 경우 산불과 대기오염의 원인이 됨으로써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은 지역농업발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다만, 충청북도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배출 및 처리상황을 규정된 영농폐기물 수거 등의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통해 관할구역이 적정하게 처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영농인과 사업자(영농폐기물 수거자, 운반업자)의 영농폐기물 수거에 관한 의식 제고와 발생억제의 중요성 이해에 대한 교육에도 노력하여 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